
‘후쿠시마 강진·원전사고’에 대응한 일본의 제·개정법령 분석

미즈시마 레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③

‘후쿠시마 강진 · 원전사고’에 대응한 일본의 제 · 개정법령 분석

미즈시마 레오

**‘후쿠시마 강진 · 원전사고’에
대응한 일본의 제 · 개정법령 분석**
Analysis of Policies Regarding Fukushima Earthquake
and Nuclear Disaster in Japan

연구자 : 미즈시마 레오(초청연구원)

Leo Mizushima

2012. 6. 8.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음.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라고 불리는 이 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사상 최대규모라고 함. 지진의 규모는 M 9.0이었으며 1923년의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의 M 7.9나 1995년의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의 M 7.3보다도 큼. 세계적으로 보아도 관측사상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함.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14,949명이 사망하였고, 9,893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음
-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이외에도 많은 2차 재해를 초래하였음. 첫째는 대규모 해일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임
- 둘째는 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로 인한 원전사고임
-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재해대책 법제를 살펴보고,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첫째 목적은 재해시 국가의 역할 모색임. 일본 헌법 제25조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지진에 의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

- 일본의 경우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응하고 빠른 복구를 위하여 약 70여 건의 특별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 후쿠시마 강진·원전 사고’ 이후에 제·개정된 법률들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입법들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를 위한 재난관리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한국의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는 일본에서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 대책 법제임
 - 일본열도 근해는 판 구조론적(plate tectonics)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남. 지난 100년 간을 보면 1923년에는 간토 대지진, 1995년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음
 - 앞으로 4년 이내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70퍼센트라고 함. 따라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한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지는 중요한 문제임.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를 보고자 함

- 둘째는 일본에서의 원자력 관련 법제에 대해서임
 -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지진의 2차 재해인 해일에 의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이상이 생겼음
 -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존치에 대하여 크게 논의하게 되었음
 - 원자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법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음
 -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자 함
- 셋째는 일본의 법제도를 살펴본 뒤에 한국에서는 어떤 재해 대책 법제가 있는지 보고자 함
 - 일본에서의 재해 및 원자력 관련 법제를 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재해 및 긴급적인 상황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일본이 경험한 재난과 일본의 법제를 분석하여 재난 및 긴급사태시 법률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현재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주제어 : 동일본대지진, 해일, 원자력발전소, 재해, 후쿠시마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Background

- On March 11th 2011, a severe earthquake, coined “Tohoku” with a magnitude of 9.0 on the Richter Scale, occurred in Japan. Tohoku is considered the strongest magnitude earthquake that has occurred in Japan as of this date - considered stronger than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or that of Hanshin Awaji Earthquake in 1995. The devastation that occurred because of Tohoku was a death toll of 14,949 persons and the disappearance of 9,893 persons.
-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disaster, the effects of Tohoku included: a large-scale tsunami that attacked the east coast of Japan, which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many homes and lives and the nuclear power plant crisis which occurred.
- Through the discussion of Japan's legislation for disasters, it will provide Korea with assistance in amending Korea's legal structure for disaster relief.

Objectives

- The first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ole of the nation in cases of disasters. Article 2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ecures the right to lif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analyze a nation's response to support persons who have been displaced by disasters.

- To restore Japan,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formulated and enacted since Tohoku and the 2011 Fukushima nuclear crisis.
- This research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after Tohoku and discuss how these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prevention mechanisms from disasters.
- Using the research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similarities within Korea's laws and regulations is discussed.

II. Main Contents

- This research consists of three themes.
- First,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earthquakes.
 - In Japan, earthquakes occurs frequently because of plate tectonics. During the past 100 years, two major earthquakes included: the Great Kanto, which occurred in 1923; and the Hanshin Awaji, which occurred in 1995.
 - There are forecasts that another severe earthquake will occur in Japan within the next four years. As such, preparations to buffer the next earthquake is essential. In addition, discussions must continue and finding rescue measures is imperative.

- Secondl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in Japan are addressed.
 - After Tohoku in 2011, a gigantic tsunami attacked the Tohoku area of Japan. This caused the malfun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Fukushima.
 - The aboli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as not a forefront issue prior to Tohoku, with the enthusiasm from only a few members of society. After Tohoku, discussions on the abolition of nuclear power plants became a prominent issue.
 - Prior to Tohoku and the Fukushima nuclear crisis, Japan had many laws and regula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se events, proliferation of supplementary laws and regulations emerged regarding nuclear power plants.
 -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he laws and regulations on earthquakes and nuclear power plants established after the Tohoku in 2011.
- Lastly, using the analysis undertaken for Japan, comparisons and differences with Korea's laws and regulations on disasters are addressed.
 - Korea will be able to obtain further insight by reviewing the analysis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regarding nuclear power.

III. Expected Effect

- A platform is provided to further discussions on the role of nations in the case of emergencies and disasters and correspondences between governments.
- The paper will be able to provide further discussions on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natural disaster.
- By discussing the laws and the regulations of Japan, it will provide Korea with insight to amending disaster legislation further to fortify existing legislation.
- In Korea, public opinions toward nuclear power plants remain positive and as such, comparison between Japan's and Korea's legislations is difficult. However, discussions in Japan provide further scenarios and suggestions which can assist Korea in the near future.

▶▶ Key Words : The Tohoku Earthquake, tsunam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Fukushima

要 旨

I. 背景および目的

研究の背景

- 2011年3月11日、日本の宮城県沖で大規模な地震が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と呼ばれるこの地震は、日本における観測史上、最大規模といわれている。マグニチュードは9.0であり、1923年の関東大震災のマグニチュード7.9や1995年の阪神・淡路大震災のマグニチュード7.3よりも大きい。世界的にも観測史上5番目に大きいという。この地震によって1万4949人が死亡し、9893人が行方不明となった。
- 東日本大震災は、地震以外にも多くの二次災害を引き起こした。第一に大規模な津波が発生し、多くの人命が失われた。
- 第二に津波により原子力発電所の稼動に障害が生じたため、原発事故を引き起こした。
- 地震が頻繁に起こる日本における災害対策法制を概観し、韓国でどのようなしたらよいかをみていくことは大きな参考になるだろう。

研究の目的

- この研究の第一の目的は、災害時における国家の役割の模索である。日本国憲法では第25条において、生存権を保障している。したがって地震により生活基盤を失った人々を、国家がどのように支援するのかは重要な問題である。

- また、日本の場合、2011年3月に発生した福島原発事故以降、被害を復旧するために、被害に対応し、早い復旧のために約70余りの特別法および関連法律の制定・改正が行われている。
- 本研究は、東日本大震災および福島原発事故以降に制定・改正された法律を調査し、類型別に内容を整理し、制定・改正の意味を分析し、こうした立法が事前予防および事後対処のための災難管理において、どのような役割と機能をするか検討する。
- これを通じ、韓国の関連法律の改正方法を模索し、今後の気候変化による自然災害に対応できる立法および政策方向を導き出す。

II. 主要内容

- 本研究は主に3つの内容で構成されている。
- 第一に、日本における大地震以降の震災対策法制についてである。
- 日本列島近海は太平洋プレートとユーラシアプレート、フィリピンプレートなどが交差しており、地震が頻繁に発生する。過去100年をみると、1923年には関東大震災が、1995年には阪神・淡路大震災など、大規模な地震が発生している。
- 今後4年以内に大規模な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が70パーセントといわれている。したがって地震による被害をどのように救済するか、またどのように地震に備えるのかは重要な問題である。本研究では日本における震災対策法制をみる。

- 第二に、日本における原子力関連法制についてである。
 - 2011年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では、二次災害である津波の被害により、福島原子力発電所の稼動に異常が生じた。
 - こうした福島原発事故以降、日本では原子力発電所の存続をめぐって、大きく議論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
 - 原子力または原子力発電所に関する法制は、福島原発事故以前から存在していたが、福島原発事故以降、多くの法律が制定された。
 - 本研究では、福島原発事故以降の原子力および原子力発電所関連法制について法律を調査する。
- 第三に、日本における法制度をみたあと、韓国ではどのような災害対策法制が行われているのかみる。
 - 日本における災害および原子力関連法制をみたあと、韓国に対する示唆点を提示する。

Ⅲ. 期待効果

- 災害及び緊急的な状況における国家の役割を再検討することができ、政府による迅速な対応を模索することができる。
- 自然災害が発生する場合の法律問題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ができる。
- 日本が経験した災難と、日本の法制を分析し、災害および緊急状態に対する法律の未整備をあらかじめ予防することができる。

- 韓国では現在でも原子力発電所の存置について肯定的であるが、日本における議論を提示することで、韓国にとって今後の指針とすることができる。

▶▶ キーワード : 東日本大震災、津波、原子力発電所、災害、福島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要 旨	11
제 1 장 서 론	17
I. 연구의 목적	17
II. 연구의 범위	18
제 2 장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	21
I. 동일본 대지진의 개요	21
II.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30
1. 재해대책기본법	31
2.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33
3.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33
4.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한정된 한시법	34
III.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36
1. 동일본 대지진 복구 기본법	36
2.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	38
IV. 소 결	48

제 3 장 일본에서의 원자력 법제	51
I.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51
II.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 법제	52
1. 원자력기본법	52
2. 원자력위원회	54
3.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54
4.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	55
III.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법제	57
IV. 소 결	60
제 4 장 한국의 법제에 대한 시사점	63
I. 재해관련법제 비교	63
II. 지진관련법제 비교	65
III. 원자력 손해배상관련법제 비교	70
IV. 소 결	74
제 5 장 결 론	75
참 고 문 헌	77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으며, 이 지진으로 인하여 약 1만 5000명이 사망하였다.

많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때는 지진 발생부터 3일 뒤에는 지진대책 담당성(震災対策担当省)이 임명되었으며 지진재해 날로부터 36일 뒤에는 「복구기본법(復興基本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지진으로부터의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복구대책본부(復興對策本部)’의 설치 이외에도 야당 의원도 참여하는 ‘복구실시본부(復興實施本部)’라는 기관까지 설치되었나, 오히려 기관의 난립에 의하여 원활한 복구대책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¹⁾

이번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계기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국가는 모든 생활면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제2항).

1) 「復興基本法案、首相発言で混迷＝阪神大震災時より迅速さ欠く」、時事通信:
http://www.jiji.com/ji/v?p=ve_soc_jishin-higashinohon20110426j-01-w530
(검색일: 2012. 4. 6.)

헌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이지만 그 기축은 ‘개인의 존중’(일본 헌법 제13조)에 있다.²⁾ 따라서 이번의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전 사고에 의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응하고 빠른 복구를 위하여 약 70여 건의 특별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역할 또는 헌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동안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생존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생존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본 연구는 ‘일본 후쿠시마 강진·원전 사고’ 이후에 제·개정된 법률들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입법들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를 위한 재난관리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헌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본에서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 대책 법제이다. 일본열도 근해는 판 구조론

2) 水島朝穂 『東日本大震災と憲法』 (早稲田大学出版部・2012年) 79頁。

적(plate tectonics)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 100년 간을 보면 1923년에는 간토 대지진(關東大震災), 1995년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4년 이내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70퍼센트라고 한다.³⁾ 따라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한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를 보고자 한다.

둘째는 일본의 원자력 관련 법제에 대해서이다.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지진의 2차 재해인 해일에 의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이상이 생겼다.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존속여부에 대하여 크게 논의하게 되었다. 원자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법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는 일본의 법제도를 살펴본 뒤에 한국에서는 어떤 재해대책 법제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재해 및 원자력 관련 법제를 보고 한국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법제에 대한 취급에 있어 일본과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존부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국가와 비판적인 국가가 있다. 전자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이나 프랑스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독일이나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온실가스 삭감에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인 발전방법이라는 이유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었다.⁴⁾ 그러나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수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3) 「首都直下地震、4年以内の発生確立70% M7クラス、東大試算」産経新聞 <http://sankei.jp.msn.com/affairs/print/120123/dst12012311250005-c.htm> (검색일: 2012. 3. 7.)

4) 『「原発はエコ」50%』産経新聞、2009年11月27日、5面。

이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존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증가하였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57%를 점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친화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본과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논의를 그대로 한국에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일본과 한국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자력 법제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에서의 제도를 소개하여 재난관리나 산업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5) 「原発再開「反対」が 57% 朝日新聞世論調査」朝日新聞:
<http://www.asahi.com/special/08003/TKY201203120551.html> (검색일: 2012. 4. 9.)

제 2 장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

I. 동일본 대지진의 개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지방의 동남동 약 130 km 부근을 진원으로 한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에 의하여 14,919명이 사망하여 9,893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이 숫자는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의 인적 피해(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쳐서 6,437명이었음)보다 많다.⁶⁾

이 지진의 규모는 M 9.0이었으며 1923년의 간토대지진이 M 7.9,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M 7.3이었으므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한다.⁷⁾ 세계적으로 봐도 1960년에 일어난 칠레 지진의 M 9.5, 1964년에 일어난 알래스카 지진이 M 9.2와 비슷하고, 세계 관측 사상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한다.⁸⁾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⁹⁾이라고 불리는 이 지진은 단지 지진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2차 재해를 수반하였다. 예를 들면 해일에 의한 인적 피해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일본 대지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대형지진이었다는 점이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규모이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인적 피해가 났다. 둘째는 남북 500km, 동서 200km에 걸친 광역형 재해이었다는 점이다. 해일에 인하여 침수된 면적은 도쿄 23구의 약 90%가 된다고 한다. 셋째는 재해구조법에 적용

6) 伊藤滋・尾島俊雄 『東日本大震災からの日本再生』(中央公論新社・2011年) 9頁。

7) 岩淵美智子 『東日本大震災と政治 政治は動いていないのか』(パブラボ・2011年) 13頁。

8) 伊藤滋・尾島俊雄、前掲、8頁。

9) 이 지진의 명칭은 처음에는 기상청이 “平成23年 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으로 하였으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일본정부에 의하여 “東日本大震災”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의 지명이 유명하기 때문에 편의상 “후쿠시마 강진”이라는 용어를 주제로 사용하였다.

된 점이다. 241개의 시정촌(市町村)¹⁰⁾에 적용되었으며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보다 10배나 많다. 넷째는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해일, 원자력 발전소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일어난 복합형 재해이다. 다섯째는 재난 지역이 지방도시, 농촌, 어촌, 산악지역 등 다양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인구가 1만 명 이하의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일곱째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다.¹¹⁾

<표1>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¹²⁾

항 목	데이터	
발생날짜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진원 및 규모 (추정)	산기쿠 앞바다(三陸沖) (북위38.1도, 동경142.9도, 오시카 반도의 동남동 130km 부근) 깊이 24km, 모멘트 규모 Mw9.0	
진원역	길이 약 450km, 폭 약200km	
단층이 움직인 정도	최대 20~30km 정도	
진원 직상의 해저 이동량	동남동으로 약 24km 이동, 약 3m 용기	
	진도 7	미야기현(宮城縣) 북부
	진도 6 강	미야기현 남부 및 중부, 후쿠시마현(福島縣) 나카도리(中通り) 및 하마도리(浜通り), 이바라키현(茨城縣) 북부 및 남부, 도치기현(栃木縣) 북부 및 남부

10)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이며 한국의 시읍면에 상당한다.

11)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러한 특징 설명에 대해서는 岩淵美智子、前掲、13-16頁 参照。

12) 일본 내각부(内閣府(防災担当))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2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o3.pdf (검색일: 2012. 2. 24.)

항 목	데이터	
	진도 6 약	이와테현(岩手縣) 연안남부·내륙북부·내륙남부, 후쿠시마현 아이즈, 군마현(群馬縣) 남부, 사이타마현(埼玉縣) 남부, 치바현(千葉縣) 북서부
	진도 5 강	아오모리현(青森縣) 산파치카미키타(三八上北)·시모키타(下北), 이와테현 연안북부, 아키타현(秋田縣) 현안남부·내륙남부, 야마가타현(山形縣) 무라야마(村山)·오키타마(置賜), 군마현 북부, 사이타마현 북부, 치바현 동부 및 남부, 도쿄 23구, 니지마(新島), 가나가와현(神奈川縣) 동부 및 서부, 야마나시현(山梨縣) 중부·서부·동부·후지5호(富士五湖)

일본에서는 지난 100년 사이에 간토 대지진이나 한신·아와지 대지진 그리고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 등이 일어났으며 각각 지진이 다양한 2차 재해를 일으켰다. 간토 대지진에서는 화재에 의한 재해가 많았고,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의 붕괴에 수반된 재해가 현저하였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해일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¹³⁾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는 해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규정된 법제는 없었다.¹⁴⁾ 당시에 해일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는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地震防災対策特別措置法)」,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과 관련한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日本海溝·千島海溝周辺海溝型地震に関連した地震防災対策特別措置法)」, 「동남해·남해지진과 관련한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東南海·南海地震に関連した地震防災

13) 飯島淳子「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法学セミナー、通巻第683号(2011年11月)、12頁。
 14) 김치환 “일본에서의 지진과 해일대응법체계”, 고려법학, 제60호, 2011년 3월, 5면.

対策特別措置法)」 등이 있다.¹⁵⁾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해일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平成23年6月24日法律第77号)」이나 「해일방재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津波防災地域づくりに関する法律 平成23年12月14日法律第123号)」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일 피해의 대책이 이루어졌다.

<표2> 해일에 관한 법률

법령명
<p>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제정된 해일 관련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昭和36年11月15日法律第223号) ○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昭和53年6月15日法律第73号) ○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地震防災対策特別措置法)(平成7年6月16日法律第111号) ○ 일본해구·지시마해구 주변해구형 지진에 관한 지진방재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日本海溝・千島海溝周辺海溝型地震に係る地震防災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16年4月2日法律第27号) ○ 도난카이·난카이지진에 관한 지진방재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東南海・南海地震に係る地震防災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14年7月26日法律第92号)
<p>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제정된 해일 관련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일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平成23年6月24日法律第77号) ○ 해일 방재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津波防災地域づくりに関する法律)(平成23年12月14日法律第123号)

「해일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1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이 법률의 구조를 보면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동일본 대지진의 참화

15) 김치환, 앞의 논문, 3면.

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해일이란 平成23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번 발생하면 광역에 걸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미치게 하고, 우리나라¹⁷⁾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재해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몇 번이나 해일에 의하여 심대한 피해를 입고 또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은 통탄스럽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재해의 발생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및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일은 그 발생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인명 피해를 상당 정도 경감할 수 있으므로 해일 및 해일에 의한 피해의 특성, 해일에 대비할 필요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미증유의 대재해를 경험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지각의 경계 및 그 주변에 위치하여 항상 대규모의 지진 및 이에 수반하는 해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명을 빼앗은 동일본 대지진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 동안의 해일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가로서 솔직히 반성하여 해일에 관한 최신의 견해 및 선인의 지혜, 행동 기타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두면서 해일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일에 관한 기본적 인식을 명확히 하면서 해일대책을 종합적 및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해일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전문).

조문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째는 ‘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제1-3조), 둘째는 ‘소프트(software) 면에서의 해일대책의 노

16)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概要」 1頁:
http://www.meti.go.jp/committee/sougouenergy/toshinetsu/saigai_taisaku_wg/001_s03_00.pdf
(검색일: 2012. 3. 22.)

17) 여기서는 일본을 말한다.

력의무’(제4-9조), 셋째는 ‘하드(hardware) 면에서의 해일대책의 노력의무’(제10-13조), 넷째는 ‘해일대책에 관한 기타 시책에 관한 규정’(제14-16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된다.¹⁸⁾

‘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해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일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지를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적 인식으로 “해일은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면 인명에 대한 피해를 상당 정도 경감할 수 있으므로 방조제나 해일 피난시설의 정비와 함께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의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해일의 광역 전파성부터 관측·조사연구에 관한 국제협력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확인하고 있다.¹⁹⁾

‘소프트 면에서의 해일대책의 노력의무’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연구기관, 사업자, 국민 등 상호간의 긴밀한 연휴협력체제의 정비”, “해일의 관측체제의 강화 및 조사연구의 추진”, “상정되는 해일피해에 관한 해일의 규모 및 해일대책 시설의 정비 등 상황마다 복수의 예측 실시 및 해일대책으로 활용”, “학교 교육 등을 통한 영상 등을 사용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및 훈련 등”, “상정되는 해일피해에 관한 인쇄물 배포, 영상의 시청 등에 의한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수지”, “예보·경보나 피난권고·지시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 등”, “해일 피난계획의 작성·공표 등”을 내세우고 있다.²⁰⁾

18)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概要」 1頁:

http://www.meti.go.jp/committee/sougouenergy/toshinetsu/saigai_taisaku_wg/001_s03_00.pdf
(검색일: 2012. 3. 22.)

19)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概要」 1頁:

http://www.meti.go.jp/committee/sougouenergy/toshinetsu/saigai_taisaku_wg/001_s03_00.pdf
(검색일: 2012. 3. 22.)

20)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概要」 1頁:

http://www.meti.go.jp/committee/sougouenergy/toshinetsu/saigai_taisaku_wg/001_s03_00.pdf

‘하드 면에서의 해일대책의 노력의무’에 대해서는 “해일대책에 관한 시설 정비 등에서의 최신의 견해에 의거한 정비, 기존의 시설의 유지·개량, 해안·하천 제방의 성능 확보·향상, 해일 피난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주택 등의 입지 억제, 연안부에 대한 견뢰(堅牢)건축물 정비 등, 해일대책 추진에 배려한 도시 만들기의 추진”, “석유류, 화약류, 고압가스, 핵연료물질 등의 위험물 시설의 해일로부터의 안전 확보”, “재해 복구에 관한 국가의 제도로써 해일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내세우고 있다.²¹⁾

‘해일대책에 관한 기타 시책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해일의 광역 전파성을 염두에 둔 해일대책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의 노력의무”, “해일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세제상의 조치 등의 노력의무”,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하자드 맵(hazard map), 영상의 작성에 관한 재정상의 원조”, “해일 피난시설 등의 정비 촉진을 위한 재정상·세제상의 조치에 관한 검토”,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한 동일본 대지진의 검증 등을 염두에 둔 해일대책의 방법에 관한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²²⁾

그러나 이 법률에서의 조문의 문언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른바 ‘노력목표’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일 방재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은 11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2조), 제2장이 기본지침 등(제3-5조), 제3장이 해일 침수의 설정 등(제6-9조), 제4장이 추진계획의 작성 등(제

(검색일: 2012. 3. 22.)

21)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概要」 1頁:

http://www.meti.go.jp/committee/sougouenergy/toshinetsu/saigai_taisaku_wg/001_s03_00.pdf

(검색일: 2012. 3. 22.)

22)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概要」 1頁:

http://www.meti.go.jp/committee/sougouenergy/toshinetsu/saigai_taisaku_wg/001_s03_00.pdf

(검색일: 2012. 3. 22.)

10-11조), 제5장이 추진계획에서의 특별한 조치(제12-16조), 제6장이 한 공단의 해일방재 거점 시가지형성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제17조), 제7장이 해일방호시설 등(제18-52조), 제8장이 해일재해경계구역(제53-71조), 제9장이 해일재해특별경계구역(제72-92조), 제10장이 잡칙(제93-98조), 제11장이 벌칙(제99-103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해일 방재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은 “해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할 효과가 높고, 미래에 걸쳐서 안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의 정비, 이용 및 보전(이하, ‘해일 방재지역 만들기’라고 함)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일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대신(國土交通大臣)에 의한 기본지침의 책정, 시정촌에 의한 추진계획의 작성, 추진계획구역에서의 특별한 조치 및 한 공단의 해일 방재 거점 시가지 형성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해일 방호시설의 관리, 해일재해 경계구역에서의 경계 피난체제의 정비 및 해일재해 특별경계 구역에서의 일정한 개발행위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제한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공공의 복지 확보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해일 방재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원을 위하여 장래를 향하여 해일재해에 강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해일재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시책의 배경이다.²³⁾

따라서 하드와 소프트의 시책을 합친 ‘다중방어’에 의한 ‘해일 방재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일 침수 상정의 설정’, ‘추진계획의 작성’, ‘해일 방호시설의 관리 등’, ‘해일재해 경계구역 및 해일재해

23) 일본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0171064.pdf> (검색일: 2012. 3. 23.)

특별경계구역의 지정'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²⁴⁾

<표3> 해일의 규모²⁵⁾

<p>해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11일 14:49 해일 경보 발표 ○ 3월 13일 17:58 해일주의보 모두 해제 															
<p>해일 관측치(검초소)</p> <table border="0"> <tr> <td>에리모조 쇼야(えりも町庶野)</td> <td>최대파 15:44 3.5m</td> </tr> <tr> <td>미야코(宮古)</td> <td>최대파 15:26 8.5m 이상</td> </tr> <tr> <td>오오후나토(大船渡)</td> <td>최대파 15:18 8.0m 이상</td> </tr> <tr> <td>카마이시(釜石)</td> <td>최대파 15:21 4.2m 이상</td> </tr> <tr> <td>이시마키시 아유카와(石巻市 鮎川)</td> <td>최대파 15:26 8.6m 이상</td> </tr> <tr> <td>소마(相馬)</td> <td>최대파 15:51 9.3m 이상</td> </tr> <tr> <td>오아라이(大洗)</td> <td>최대파 16:52 4.0m</td> </tr> </table>		에리모조 쇼야(えりも町庶野)	최대파 15:44 3.5m	미야코(宮古)	최대파 15:26 8.5m 이상	오오후나토(大船渡)	최대파 15:18 8.0m 이상	카마이시(釜石)	최대파 15:21 4.2m 이상	이시마키시 아유카와(石巻市 鮎川)	최대파 15:26 8.6m 이상	소마(相馬)	최대파 15:51 9.3m 이상	오아라이(大洗)	최대파 16:52 4.0m
에리모조 쇼야(えりも町庶野)	최대파 15:44 3.5m														
미야코(宮古)	최대파 15:26 8.5m 이상														
오오후나토(大船渡)	최대파 15:18 8.0m 이상														
카마이시(釜石)	최대파 15:21 4.2m 이상														
이시마키시 아유카와(石巻市 鮎川)	최대파 15:26 8.6m 이상														
소마(相馬)	최대파 15:51 9.3m 이상														
오아라이(大洗)	최대파 16:52 4.0m														
<p>피해상황 등 (2011년 9월 6일 현재)</p> <p>(1) 인적 피해</p> <table border="0"> <tr> <td>가. 사망자</td> <td>15,769명</td> </tr> <tr> <td>나. 행방불명</td> <td>4,227명</td> </tr> <tr> <td>다. 부상자</td> <td>5,929명</td> </tr> </table> <p>(2) 건축물 피해</p> <table border="0"> <tr> <td>가. 전괴</td> <td>114,995호</td> </tr> <tr> <td>나. 반괴</td> <td>160,263호</td> </tr> <tr> <td>다. 일부파괴</td> <td>554,995호</td> </tr> </table>		가. 사망자	15,769명	나. 행방불명	4,227명	다. 부상자	5,929명	가. 전괴	114,995호	나. 반괴	160,263호	다. 일부파괴	554,995호		
가. 사망자	15,769명														
나. 행방불명	4,227명														
다. 부상자	5,929명														
가. 전괴	114,995호														
나. 반괴	160,263호														
다. 일부파괴	554,995호														

2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0171064.pdf>
(검색일: 2012. 3. 23.)

25)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2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u3.pdf (검색일: 2012. 2. 24.)

II.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일본열도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100년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1923년의 간토대지진이나, 1995년의 한신·아와지대지진을 들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제정된 지진대책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재해 전반에 관한 법령이다. 둘째는 지진에 대비한 법령이다. 그리고 셋째는 한신·아와지 대지진만으로 한정된 한시법이다.

<표4> ‘지진’ 관련 법률

법령명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地震防災対策特別措置法)(平成7年6月16日法律第111号)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에서의 지진대책 긴급정비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地震防災対策強化地域における地震対策緊急整備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昭和55年5月28日法律第63号)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地震保険に関する法律)(昭和41年5月18日法律第73号)
헤이세이23년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 등에 의한 재해로부터의 복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세비 월액 감액 특례에 관한 법률(平成二十三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等による災害からの復旧復興に資するための国会議員の歳費の月額の減額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3月31日法律第11号)
헤이세이23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에 수반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平成二十三年三月十一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23年8月30日法律第110号)
일본해구·지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에 관한 지진방재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日本海溝・千島海溝周辺海溝型地震に係る地震防災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16年4月2日法律第27号)

법령명
도난카이·난카이 지진에 관한 지진방재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東南海・南海地震に係る地震防災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14年7月26日法律第92号)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昭和53年6月15日法律第73号)

1. 재해대책기본법

먼저 첫째 유형을 보고자 한다. 재해에 관한 법령으로는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 昭和36年11月15日法律第223号)」을 들 수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은 1959년에 일어난 이세만(伊勢湾) 태풍에 의한 피해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10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10조), 제2장이 ‘방재에 관한 조직’(제11-33조), 제3장이 ‘방재계획’(제34-45조), 제4장이 ‘재해예방’(제46-49조), 제5장이 ‘재해응급대책’(제50-86조), 제6장이 ‘재해복구’(제87-90조), 제7장 ‘재정금융조치’(제91-104조), 제8장이 ‘재해긴급조치’(제105-109조의 2), 제9장이 ‘잡칙’(제110-112조), 제10장이 ‘별칙’(제113-117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재해대책기본법’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하는 것으로 종합적 및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지의 확보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재해대책기본법’은 ‘재해’나 ‘방재’ 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재해’란 “폭풍, 호우, 호설, 홍수, 고조(高潮), 지진, 해일, 분화 기타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의 화재 혹은 폭발 기타 그것이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정령으로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있으며(제2조 제1호), ‘방재’는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 확대를 예방하여 및 재해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2호). 따라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재해’란 자연재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책무를 규정한다. 국가는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사명이 있으므로 방재에 관하여 만전을 기할 책무를 가진다(제3조 제1항). 도도부현(都道府縣)²⁶⁾은 당해 도도부현의 지역 및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방재계획을 작성, 실시할 수 있도록 소관사무에 대해서 당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대해서 권고, 지도, 조언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 제1항). 그리고 시정촌 역시 당해 지역과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을 작성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5조 제1항).

다음에 둘째 유형인 지진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진에 대비한 법령으로는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地震防災対策特別措置法 平成7年6月16日法律第111号)」,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大規模地震対策特別措置法 昭和53年6月15日法律第73号)」,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에서의 지진대책긴급정비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地震防災対策強化地域における地震対策緊急整備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昭和55年5月28日法律第63号)」 등을 들 수 있다.

26) 일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이며 한국의 도와 유사함.

2.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은 “지진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획의 작성 및 이에 의거한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대하여 정하며, 지진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지진방재대책 강화를 도모하여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복지 확보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률에 의하면 도도부현 지사는 지진에 의하여 현저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긴급으로 정비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것에 대하여 5개년의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1항). 또한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를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설치하여(제7조 제1항),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学大臣)이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장이 된다(제8조 제1항).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는 정책위원회(제9조)와 지진조사위원회(제10조)를 설치한다.

3.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은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 이 법률은 “대규모의 지진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의 지정, 지진관측체제의 정비 기타 지진방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지진방재 응급대책 기타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지진방재대책의 강화를 도모하여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 복지의 확보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은 지진재해나 지진방재 등의 용어에 대해서 규정한다. 예컨대 ‘지진재해’에 대해서는 “지진동에 의하

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이에 수반하는 해일, 화재, 폭발, 기타 이상한 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지진방재’는 “지진재해 발생 방지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 경감을 미리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동조 제2호).

내각총리대신은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3조 제1항), 지정을 받은 지역에서는 ‘지진방재기본계획’(제5조), ‘지진방재강화계획’(제6조), ‘지진방재응급계획’(제7조) 등을 세우고 지진에 대비한다.

그리고 총리는 기상청 장관으로부터 지진예보를 받아서 지진방재응급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각의를 통해서 지진재해에 관한 경계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제9조). 경계선언이 발령되면 임시적으로 내각부에 ‘지진재해 경계본부’가 설치되며(제10조 제1항), 내각총리가 ‘지진재해 경계본부장’이 된다(제11조).

본부장은 지진방재응급대책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지정행정기관장과 관계지정지방행정기관장,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방위청 장관에 대하여 자위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경계선언이 발령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도도부현 또는 주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24조).

4.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한정된 한시법

그리고 셋째 유형인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한정된 한시법을 보고자 한다. 먼저 「한신·아와지 대지진 복구의 기본방침 및 조직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復興の基本方針及び組織に関する法律 平成7年2月24日法律第12号)」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현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당해 지역의 복구에 대한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여 한신·아와지

복구 대책본부의 설치 등을 정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또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자(被災者=재난피해자)등에 관한 국세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の被災者等に係る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平成7年2月20日法律第11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及び助成に関する法律 平成7年3月1日法律第16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헤이세이 6년도의 공채 발행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平成6年度における公債の発行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平成7年3月1日法律第17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수반하는 허가 등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긴급조치법(阪神・淡路大震災に伴う許可等の有効期間の延長等に関する緊急措置法 平成7年3月1日法律第19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수반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신고의 수수료 특례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に伴う民事調停法による調停の申立ての手数料の特例に関する法律 平成7年3月17日法律第3号)」 등이 있다.

그리고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5>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관한 법률

법령명
한신·아와지 대지진 복구 기본방침 및 조직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復興の基本方針及び組織に関する法律) (平成7年2月24日法律第12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자 등에 관한 국세관계 법률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の被災者等に係る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7年2月20日法律第11号)

법령명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 (阪神・淡路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及び助成に関する法律) (平成7年3月1日法律第16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헤이세이 6년도의 공채 발행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平成6年度における公債の発行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平成7年3月1日法律第17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수반하는 허가 등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긴급조치법(阪神・淡路大震災に伴う許可等の有効期間の延長等に関する緊急措置法)(平成7年3月1日法律第19号)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수반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신청 수수료의 특례에 관한 법률(阪神・淡路大震災に伴う民事調停法による調停の申立ての手数料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7年3月17日法律第31号)

Ⅲ.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1. 동일본 대지진 복구 기본법

원래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동일본 대지진 복구의 기본방침 및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 내각제출 법안으로 2011년 5월 13일에 중의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조직의 권한에 관해서 야당의 반대를 받았으므로 동년 6월 9일에 철회되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기본법안’이 제출되어 가결·성립하였다.²⁷⁾

27) 飯島淳子「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前掲、10頁。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제정된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법(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平成23年6月24日法律第76号)」은 네 가지 장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장), 제2장이 ‘기본적 시책’(제6-10조), 제3장이 ‘동일본 대지진 복구대책본부’(제11-23조), 제4장이 ‘복구청의 설치에 관한 기본방침’(제24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법」의 목적은 “동일본 대지진은 그 피해가 심각하고 동시에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에 걸친 등 극히 대규모한 것이고, 지진 및 해일 및 이에 수반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사고에 의한 복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미증유의 국난인 것에 비추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여 동시에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이 안심하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를 위한 자금의 확보, 복구특별구역제도의 정비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동일본 대지진 복구대책본부의 설치 및 복구청의 설치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 등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의 원활한 추진과 활력이 있는 일본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법」의 제3장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대책본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대책본부는 내각에 설치되고(제11조),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이 본부장이 되며(제13조), 내각관방장관 및 동일본 대지진 복구대책 담당대신(内閣官房長官および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担当大臣)이 부분부장이 된다(제14조). 제12조에서는 소관 시무에 대해서 규정한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방침에 관한 기획 및 입안과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동조 제1호), 관계지방공공단체가 하는 복원사업으로 국가의 지원 기타 관계 행정기관이 강구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를 위한 시책 실시의 추진 및 이에 관한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동조 제2호),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

라 본부로 배치된 사무(동조 제3호)가 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대책본부 중에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구상회의가 설치된다(제18조 제1항). 동일본 대지진 복구구상회의는 본부장의 자문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여, 이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본부장에게 건의하고(동조 제2항 제1호),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를 위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조사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부장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동항 제2항) 등의 사무를 행사한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법」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구상회의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에 관한 합 의제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19조).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법」은 내각에 복구청(復興庁)²⁸⁾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복구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에 관한 시책의 기획 및 입안과 종합조정 에 관한 사무(동조 제3항 제1호),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에 관한 시책의 사무에 관한 사무(동항 제2호), 기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에 관해서 필요한 사무(동항 제3호)를 소관 업무로 수행한다.

2.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 平成23年12月14日法律第122号)은 일곱 가지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2조), 제2장이 ‘복구특별구역 기본방침’(제3조), 제3장이 ‘복구추진계획에 관한 특별한 조치’(제4-45조), 제4장이 ‘복구정비계

28) 복구청에 대해서는 「복구청 설치법(復興庁設置法 平成23年法律第125号)」에서 자세히 규정된다.

획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제45-76조), 제5장이 '복구교부금 사업계획에 관한 특별한 조치'(제77-84조), 제6장이 '잡칙'(제85-90조), 제7장이 '별칙'(제91-93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복구특별구역 기본방침, 복구추진계획의 인정 및 특별 조치, 복구정비계획 실시에 관한 특별 조치, 복구교부금 사업계획에 관한 복구교부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를 위한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여 동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의 원활한 추진과 활력이 있는 일본 재생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으로 대상구역으로 인정된 지역은 11개의 縣(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의 시정촌 등을 들 수 있다.²⁹⁾

29) 일본 복구청(復興庁) 「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資料」 2頁 :

<http://www.reconstruction.go.jp/topics/%E5%BE%A9%E8%88%88%E7%89%B9%E5%8C%BA%E6%B3%95%E8%AA%AC%E6%98%8E%E8%B3%87%E6%96%99.pdf>

(검색일: 2012. 5. 27.)

<그림>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의 대상지역 지도³⁰⁾



30) 일본 복구청(復興庁) 「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資料」 2頁：
<http://www.reconstruction.go.jp/topics/%E5%BE%A9%E8%88%88%E7%89%B9%E5%8C%BA%E6%B3%95%E8%AA%AC%E6%98%8E%E8%B3%87%E6%96%99.pdf>
(검색일: 2012. 5. 27.)

<표6>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의 대상지역³¹⁾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의 대상지역	
홋카이도 (北海道)	히로오초(広尾町), 하마나카초(浜中町)
아오모리 (青森)	하치노헤시(八戸市), 미사와시(三沢市), 오이라세초(おいらせ町), 하시카미초(階上町)
이와테 (岩手)	모든 지역
미야기 (宮城)	모든 지역
후쿠시마 (福島)	모든 지역
이바라키 (茨城)	미토시(水戸市), 히타치시(日立市), 쓰치우라시(土浦市), 고가시(古河市), 이시오카시(石岡市), 유우키시(結城市), 류가사키시(龍ヶ崎市), 시모즈마시(下妻市), 조소시(常総市), 히타치오오타시(常陸太田市), 다카하기시(高萩市), 가타이바라키시(北茨城市), 가사마시(笠間市), 도리테시(取手市), 우시쿠시(牛久市), 쓰쿠바시(つくば市), 히타치나카시(ひたちなか市), 가시마시(鹿嶋市), 이타코시(潮来市), 히타치오오미야시(常陸大宮市), 나카시(那珂市), 지쿠세이시(筑西市), 반도시(板東市), 이나시키시(稲敷市), 가스미가우라시(かすみがうら市), 사쿠라가와시(桜川市), 가미스시(神栖市), 나메가타시(行方市), 호코타시(鉾田市), 쓰쿠바미라이시(つくばみらい市), 오미타마시(小美玉市), 이바라키마치(茨城町), 오오아라이마치(大洗町), 시로사토마치(城里町), 도카이무라(東海村), 다이고마치(大子町), 미호무라(美浦村), 아미마치(阿見町), 가와치마치(河内町), 도네마치(利根町)

31) 일본 복구청(復興庁) 「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資料」 2頁 :

<http://www.reconstruction.go.jp/topics/%E5%BE%A9%E8%88%88%E7%89%B9%E5%8C%BA%E6%B3%95%E8%AA%AC%E6%98%8E%E8%B3%87%E6%96%99.pdf>

(검색일: 2012. 5. 27.)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의 대상지역	
도치기 (栃木)	우즈노미야시(宇都宮市), 아시카가시(足利市), 사노시(佐野市), 오야마시(小山市), 마오카시(真岡市), 오오타와라시(大田原市), 야이타시(矢板市), 나스시오바라시(那須塩原市), 사쿠라시(さくら市), 나스카라스야마시(那須烏山市), 마시코마치(益子町), 모테기미치(茂木町), 이치카이마치(市貝町), 하가마치(芳賀町), 다카네자와마치(高根沢町), 나스마치(那須町), 나카가와마치(那珂川町)
사이타마 (埼玉)	구키시(久喜市)
지바(千葉)	지바시(千葉市), 조시시(銚子市), 이치카와시(市川市), 후나바시시(船橋市), 마즈도시(松戸市), 나리타시(成田市), 사쿠라시(佐倉市), 도가네시(東金市), 아사히시(旭市), 나라시노시(習志野市), 야치요시(八千代市), 아비코시(我孫子市), 우라야스시(浦安市), 인자이시(印西市), 도미사토시(富里市), 소사시(匝瑳市), 가토리시(香取市), 산무시(山武市), 시수이마치(酒々井町), 사카에마치(栄町), 고자키마치(神崎町), 다코마치(多古町), 도노쇼마치(東庄町), 오아미시라사토마치(大網白里町), 구주쿠리마치(九十九里町), 요코시바히카리마치(横芝光町), 시라코마치(白子町)
니가타 (新潟)	도카마치시(十日町市), 조에쓰시(上越市), 쓰난마치(津南町)
나가노 (長野)	사카에무라(栄村)

내각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의 논점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논점은 대규모 광역 재해에 대한 즉시대응 체제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둘째 논점으로는 구제부터 생활재건·사업재건까지의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법에 대한 것이고, 셋째 논점은 복구 및 복구의 원활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이다.³²⁾

32)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 2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o3.pdf (검색일: 2012. 2. 24.)

첫째 논점인 ‘대규모 광역재해에 대한 즉시대응체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네 가지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사이의 역할분담, 기능 보완’ ‘자위대의 재해시 역할’ ‘재해정보의 수집·전달체제의 정비’ ‘재해 긴급사태에 관한 운용’ 등을 재해대책기본법에서 규정된다.³³⁾

<표7> 대규모 광역재해에 대한 즉시대응체제의 방법의 주요한 조문³⁴⁾

<p>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이의 역할 분담, 기능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재해대책본부관계(재해대책기본법 제28조의 2 ~제28조의 6)· 재해 시의 직원 파견(동법 제29조 ~ 제33조)· 재해 응급대책 및 그 실시책임(동법 제50조)· 기초지자체 장의 피난 지시 등(동법 제60조), 광역지자체 지사에 의한 대행(동조 제5항)· 자방자치단체 상호의 응원요구 등(동법 제67조 ~ 제75조)· 광역지자체 지사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제73조)·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응급조치(제77조) <p>자위대의 재해 시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파견 요청의 요구 등(제68조의 2)· 재해 파견(자위대법 제83조) <p>재해정보의 수집·전달체제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책에 대한 방재상의 배려 등(재해대책기본법 제8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16호)· 기초자치단체의 경보 전달 및 경고(제56조)· 기초자치단체 장의 피난 지시 등(제60조) <p>재해긴급사태에 대한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긴급사태(제105조 ~ 제109조의 2)
--

33)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 5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o3.pdf (검색일: 2012. 2. 24.)

34)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 5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o3.pdf (검색일: 2012. 2. 24.)

둘째 논점인 ‘구제부터 생활재건·사업재건까지의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광역피난, 장기피난을 상정한 구조’, ‘물자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구조’, ‘재해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³⁵⁾

<표8> ‘구제로부터 생활재건·사업재건까지의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법 관련 조문’³⁶⁾

광역피난, 장기피난을 상정한 구조

- 시책에서의 방재상의 배려 등(재해대책기본법 제8조 제3항 등)
- 광역지자체 방재계획(제40조), 기초지자체 방재계획(제42조)
- 방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등의 의무(제49조)
- 기초지자체의 피난 지시 등(제60조)
- 재해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제94조, 제95조)
- 재해구조법
-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

물자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구조

- 긴급재해대책본부관계(제28조의 2 ~ 제28조의 6)
- 방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등의 의무(제49조)
- 긴급수송의 확보에 관한 사항(제50조 제1항 제8호)
- 재해시의 긴급통행차량(제76조 ~ 제76조의 4)
-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수용(제78조)
- 재해구조법

재해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 자주방재조직의 육성, 자선행위에 의한 방재활동 환경 정비 기타 국민의 자발적인 방재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제8조 제2항 제13호)

35)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 8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o3.pdf (검색일: 2012. 2. 24.)

36)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 8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o3.pdf (검색일: 2012. 2. 24.)

- 고령자, 장애인, 유아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방재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제8조 제2항 제14호)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리고 셋째 논점인 ‘복구 및 복구의 원활화를 위한 방법’에서는 ‘재해 복구 방법’, ‘복구계획의 제도화’, ‘경제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적 기능 상실에의 대응’, ‘제정된 각종 법률의 항구(恒久)적 제도화’ 등이 있다.³⁷⁾

<표9> 복구 및 복구의 원활화를 위한 방법 관련 조문³⁸⁾

재해복구 방법

- 재해복구(재해대책기본법 제87조 ~ 제90조)
-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관계(제94조 ~ 제100조)
- 격심(激甚)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
-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복구계획의 제도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제8조 제3항)

경제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적 기능 상실에의 대응

-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책무(제6조)
- 지정공공기관의 방재업무계획(제39조)
- 지정공공기관 등의 응급조치(제80조)
- 지정공공기관의 재해복구의 실시책임(제87조)

제정된 각종 법률의 항구(恒久)적 제도화

37)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 12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ō3.pdf (검색일: 2012. 2. 24.)

38) 일본 내각부(内閣府) 「東日本大震災と災害対策法制について」 12頁:

http://www.bousai.go.jp/1info/saigaitaisaku/1/1_shiryō3.pdf (검색일: 2012. 2. 24.)

<표10> 동일본 대지진 관련 법제

법령명
동일본 대지진에 수반하는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기일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伴う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期日等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3月22日法律第2号)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 등에 관한 국세관계 법률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の被災者等に係る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4月27日法律第29号)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받은 공공토목 시설의 재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공사의 국가 등에 의한 대행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よる被害を受けた公共土木施設の災害復旧事業等に係る工事の国等による代行に関する法律)(平成23年4月29日法律第32号)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은 시가지에서의 건축제한 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より甚大な被害を受けた市街地における建築制限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4月29日法律第34号)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의 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及び助成に関する法律)(平成23年5月2日法律第40号)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는 것 등을 위한 헤이세이 23년도분의 지방교부세 총액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等のための平成23年度分の地方交付税の総額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平成23年5月2日法律第41号)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を図る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平成23年5月2日法律第42号)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토지개량법 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土地改良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5月2日法律第43号)
동일본 대지진에 수반하는 해구어업 조정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위원 선거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伴う海区漁業調整委員会及び農業委員会の委員の選挙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5月2日法律第44号)

Ⅲ.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법령명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에 관한 일반여권 발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の被災者に係る一般旅券の発給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6月8日法律第64号)
동일본 대지진에 수반하는 지상디지털 방송에 관한 전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伴う地上デジタル放送に係る電波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6月15日法律第68号)
동일본 대지진에 수반하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기간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伴う相続の承認又は放棄をすべき期間に係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6月21日法律第69号)
동일본 대지진 복구기본법(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平成23年6月24日法律第76号)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피난주민에 관한 사무처리의 특례 및 주소 이전자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る災害に対処するための避難住民に係る事務処理の特例及び住所移転者に係る措置に関する法律)(平成23年8月12日法律第98号)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생긴 재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東日本大震災により生じた災害廃棄物の処理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23年8月18日法律第99号)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받은 합병 시정촌에 관한 지방채의 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よる被害を受けた合併市町村に係る地方債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8月30日法律第102号)
동일본 대지진 관련 의연금에 관한 압류 금지 등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関連義援金に係る差押禁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23年8月30日法律第103号)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ための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23年12月2日法律第117号)

법령명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에 관해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지방세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に関し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防災のための施策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係る地方税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23年12月2日法律第118号)
동일본 대지진 복구 특별구역법(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平成23年12月14日法律第122号)
주식회사 동일본 대지진 사업자 재생 지원기구법(株式会社東日本大震災事業者再生支援機構法)(平成23年11月28日法律第113号)

IV. 소 결

위에서는 일본에서의 지진재해 대책법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진재해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지진재해와 관련된 법령이 여러 가지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과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이라는 비슷한 법률이 병존하고 있다. 또한 각각 법률에서 ‘대책 본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대책 본부’는 문무과학성 밑에 설치됨에 비하여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대책 본부’는 내각부 아래 설치된다. 따라서 효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지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해일에 의하여 토지가 수몰되거나 원자력 발전소 문제 등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에는 상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정부의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제105조에서 ‘재해 긴급사태’ 포고 권한과 제 109조에서는 국회 폐회 중이나 중의원 해산 중에는 총리가 생활물자

지원 등의 긴급정령을 낼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가 이러한 긴급사태를 포고한 적은 그 동안 한 번도 없다.³⁹⁾ 그동안 단 한 번도 긴급사태가 포고되지 않은 이유로는 긴급사태를 포고할 경우 총리가 큰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과 리더십 있게 대응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워서 포고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 이렇게 긴급사태 포고를 주저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할 수 있다. 지진재해 등 국민의 구조가 필요할 때는 총리가 긴급사태를 포고해서라도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전의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시정촌이 먼저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종전의 법 제도로는 시정촌이 먼저 구조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국가나 도도부현이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⁴⁰⁾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개정 「재해대책기본법」이 2012년 6월에 참의원에서 되었으며 시정촌의 요청 없이 국가와 도도부현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⁴¹⁾ 따라서 앞으로는 재해 시에 국가가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하나의 계기로 하여, 지진재해 관련 법제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비슷한 법률을 통합하여 지진재해에 관한 망라적인 기본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39) 「災害対策基本法 やはり緊急条項見直しを」産経新聞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322/plc12032203590004-n1.htm> (검색일: 2012. 7. 9.)

40) 「ここに注目! 『災害対策基本法改正と残る問題』」NHK

<http://www.nhk.or.jp/kaisetsu-blog/300/123499.html> (검색일: 2012. 7. 9.)

41) 「改正災害対策基本法が成立」朝日新聞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621/TKY201206200828.html> (검색일: 2012. 7. 9.)

제 3 장 일본에서의 원자력 법제

I.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제1~3호기. 나머지 제4~6호기는 당시 점검중이 있음)가 긴급정지하였다. 지진으로 송전선이 끊겨 외부전원을 상실하였다.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하였으나 그나마 해일로 고장이 나버렸고, 핵연료 풀이 냉각되지 못하여 핵연료의 용융이 일어났다. 고열로 인하여 원자로의 압력용기가 용해되거나 원자로 격납용기 내의 수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나 토양 그리고 해양 등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피난의 대상이 된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만으로도 약 800km², 그 이외의 비교적 방사능 수준이 높은 구역이 약 500km², 대기에 배출된 방사능물질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0-60배가 된다고 한다. 또한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의 거주자가 9만 명, 비교적 방사능 수준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는 100만 명이 된다고 한다.⁴²⁾

둘째는 피해가 장기화되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제1-3호기의 원자로 내에 있던 핵연료는 모두 다 용해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물로 냉각할 필요가 있으며 냉각을 중지할 경우 수소폭발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상태가 끝날 때까지는 약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넘친 대량의 냉각수가 해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이 심한 지역의 환경이 회복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장기에

42) 小島延夫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る被害とその法律問題」 法律時報、第83巻 第9・10号、55頁。

걸쳐서 피난생활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다.⁴³⁾

셋째는 생활 및 경제 기반 전체가 그대로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경제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농지나 가축을 버리거나 공장과 가게를 폐쇄하게 되었으므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즉 당해 지역사회 전체가 파괴된 것이다.⁴⁴⁾

II.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 법제

일본에서의 원자력 연구 및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수행하는 것, 안전을 확보하는 것, 민주적인 운용 아래 수행하는 것,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것, 성과를 공개하는 것, 국제협력을 하는 것, 장래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학술의 진보와 상업을 진흥을 도모하는 것, 인류사회의 복지와 국민생활의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여 착수되었다.⁴⁵⁾ 1955년에 「원자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원자력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여 원자력행정의 민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⁴⁶⁾

1. 원자력기본법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원자력에 관한 법령은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 昭和30年12月19日法律第186号)」이다. 이 법률은 21개의 법률과 기타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3조), 제2장이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제4-6조), 제3장이 ‘원자력의 개발기관’(제7조), 제4

43) 小島延夫、同上、56頁。

44) 小島延夫、同上。

45)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内閣府原子力委員会) : <http://www.aec.go.jp/jicst/NC/about/index.htm> (검색일: 2012. 5. 9.)

46)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内閣府原子力委員会) : <http://www.aec.go.jp/jicst/NC/about/index.htm> (검색일: 2012. 5. 9.)

장이 ‘원자력에 관한 광물의 개발취득’(제8-11조), 제5장이 ‘핵연료물질의 관리’(제12-13조), 제6장이 ‘원자로의 관리’(제14-16조), 제7장이 ‘특허발명 등에 관한 조치’(제17-19조), 제8장이 ‘방사선에 의한 장애의 방지’(제20조), 제9장이 ‘보상’(제21조), 그리고 부칙으로 규정된다.

「원자력기본법」에 따르면 원자력의 연구개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복지와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제2조에서는 원자력 개발이용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안전을 확보하여 민주적인 운용 밑에서 자주적으로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어서 제3조에서는 ‘원자력’, ‘핵원료 물질’, ‘원자로’, ‘방사선’ 등의 용어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정하고 있다.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환의 과정에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라고 하며(제3조 제1호), ‘핵연료 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핵 분열 과정에서 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다(동조 제2호). ‘핵원료 물질’이란 “우라늄광, 토륨광 기타 핵연료 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다(동조 제3호). ‘원자로’란 “핵연료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라고 한다(동조 제4호). 그리고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동조 제5호).

그리고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獨立法人 日本原子力研究開發機構)’가 원자력에 관한 개발기관이라고 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원자력기본법에서는 토지에 관한 권리,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을 입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보인다(제21조).

2. 원자력위원회

「원자력기본법」 제정에 따라 원자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원자력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첫째는 원자력연구, 개발 및 이용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자력관계경비의 배분계획을 책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원자등규제법」으로 규정하는 허가수준의 적용에 대해서 소관 대신(大臣)에게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관계행정기관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 등에 대하여 기획,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⁴⁷⁾ 또한 원자력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原子力委員会及び原子力安全委員会設置法 昭和30年12月19日法律第188号)」에서 규정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 중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정책에 관한 것”이다(제13조 제1항 제1항). 둘째는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에 관한 규제 중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것”이다(동항 제2호). 셋째는 “원자력 이용에 수반하는 장애방지의 기본에 관한 것”이다(동항 제3호). 넷째는 “방사성 강하물에 의한 장애 방지에 관한 대책의 기본에 관한 것”이다(동항 제4호). 다섯째는 기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중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것”이다(동항 제5호).

3.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2011년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전에 존재한 원자력 관련 법률로는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る法

47)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内閣府原子力委員会) :
<http://www.aec.go.jp/jicst/NC/about/index.htm> (검색일: 2012. 5. 9.)

律 昭和36年6月17日 法律第147號)을 들 수 있다.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은 7개의 장과 26개의 조문, 그리고 많은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2조), 제2장이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제3장이 ‘손해배상조치’(제6-11조), 제4장이 ‘국가의 조치’(제16-17조), 제5장이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사회’(제18조), 제6장이 ‘잡칙’(제19-23조), 제7장이 ‘벌칙’(제24-26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은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원자력손해가 일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여기서 말하는 ‘원자로의 운전’이란 원자로의 운전, 가공, 재처리, 핵연료물질의 사용, 사용후 연료의 처리, 핵연료물질 또는 그것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의 폐기를 말한다(제2조).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은 주로 세 가지 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원자력 손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이다(제3조). 둘째는 사업자의 배상조치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 의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제6-14조). 셋째는 배상책임이 배상조치의 액수를 넘어갈 경우나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 손해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제16-17조).⁴⁸⁾

그리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화해 중재 등을 담당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4.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로 1999년 9월 30일의 이바라키현 나카군 도카이무라(茨城縣 那珂郡 東海村)에서

48) 有林浩二 「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の制定と概要」, ジュリスト, 通巻第1433号, 32頁.

발생한 ‘도카이무라 JCO 임계사고(東海村JCO臨界事故)’를 들 수 있다. 이 사고에서는 핵연료 가공시설인 주식회사 JCO의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핵연료를 가공할 때 우란 용액이 임계상태가 되어 핵분열 연쇄반응이 발생하여 직원 2명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9년 12월에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原子力災害對策特別措置法 平成11年12月17日 法律 第156號)」이 시행되었다.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6조), 제2장이 ‘원자력재해의 예방에 관한 원자력 사업자의 의무 등’(제7-14조), 제3장이 ‘원자력 긴급사태선언의 발포 및 원자력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등’(제15-24조), 제4조가 ‘긴급사태 응급대책의 실시 등’(제25·26조), 제5장이 ‘원자력재해 사후대책’(제27조), 제6장이 ‘잡칙’(제28-39조), 제7장이 ‘벌칙’(제40-42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은 “원자력재해의 특수성에 비추어보고, 원자력재해의 예방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의 발포 및 원자력재해 대책본부의 설치 등 및 긴급사태응급대책의 실시 기타 원자력재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전하는 것으로 핵원료 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중략) 재해대책기본법(중략) 기타 원자력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원자력재해에 대한 대책 강화를 도모하여 원자력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원자력재해’나 ‘원자력 긴급사태’ 그리고 ‘원자력 사업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한다(제2조).

이 법률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재해 방지를 위하여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여 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성의있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국가는 이 법률 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지시하며 기타 긴급사태 응급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1조).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역시 이 법률 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재해 예방대책과 긴급사태응급대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제5조).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총리가 원자력 긴급사태선언을 할 경우에는 재해확대 방지를 위하여 총리가 직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원자력 사업자를 지휘할 수 있다(제15조). 이 규정인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처음으로 발동되었다. 또한 JOC 사건 이후에 자위대법이 개정되었으며 원자력재해파견(자위대법 제83조의 3)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법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의 2차 재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같은 년 5월 10일에 도쿄전력은 당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국가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첫째는 배상 총액에 미리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배상을 하는 것, 둘째는 원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것, 셋째는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것, 넷째는 최대한 경비를 삭감 하는 것, 다섯째는 제3자 위원회의 경영재무 조사에 응하는 것, 여섯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협력 상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것 등을 도쿄전력에 확인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골자가 결정되었다.⁴⁹⁾ 이리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지원기구법(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 平成23年8月10日 法律 第94號)」이 제정된 것이다.

49) 有林浩二、同上、32-33頁参照。

「원자력 손해배상지원기구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8조), 제2장이 설립(제9-13조), 제3장이 운영위원회(제14-22조), 제4장이 위원(役員)등(제23-34조), 제5장이 업무(제35-55조), 제6장이 재무 및 회계(제56-63조), 제7장이 감독(제64·65조), 제8장이 잡칙(제66-72조), 제9장이 벌칙(제73-79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원자력 손해배상지원기구법」의 주요한 규정을 보면, 먼저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⁵⁰⁾를 설립하여,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액이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해진 배상조치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여 원활한 배상조치, 안정적인 전기 공급,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한다(제1조). 또한 국가는 그 동안 원자력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여 만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보고 특별한 법률로 설치되는 인가법인의 형태로 하며⁵¹⁾, 기구의 자본금은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제5조).

기구의 업무의 범위는 부담금의 수납, 자금원조에 관한 업무,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러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이며(제35조),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36조).⁵²⁾

원자력 손해에 의하여 손해배상이나 전력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업자는 자금원조를 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제41조). 이 때 원자력손해의 상황, 배상 금액의 전망과 손해배상 실시방법, 자금원조의 이

50)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에 대해서는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 <http://www.ndf.go.jp/> 참조 (검색일: 2012. 3. 7.)

51) 有林浩二、前掲、33頁参照。

52) 有林浩二、同上、34頁参照。

유와 금액, 사업 및 수지에 관한 중기적(中期的)인 계획을 쓴 서류를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 원자력 사업자에 의한 자금원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구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자금원조의 여부 또는 자금원조의 내용과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제42조).

그리고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자금원조의 신청이 있으나 기구가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제45조 제1항). 특별사업계획에는 원자력손해의 상황이나 배상금액의 전망 및 손해배상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대책, 사업 및 수지에 관한 중기적인 계획(동조 제2항 제1호), 원자력사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동항 제2호), 원자력사업자의 관계자에 대한 협력의 요청 기타 대책(동항 제3호), 원자력사업자의 자산 및 수지의 상황에 관한 평가에 대한 사항(동항 제4호), 원자력사업자의 경영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대책(동항 제5호),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자금원조의 내용 및 금액(동항 제6호), 교부를 희망하는 국채의 금액 기타 자금원조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에 관한 사항(동항 제7호), 기타 주무 성령(省令)⁵³⁾에서 정하는 사항(동항 제8호)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제45조 제2항). 특별사업계획에 대하여 기구가 자금원조를 요청한 경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48조).⁵⁴⁾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원자력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책임, 둘째는 원자력사업의 운영주체나 리스크 부담 방법, 셋째는 총괄원가방식(總括原價方式)과 지역독점 그리고 발송전분리 등 전력사업에 관한 각종 제도 방법, 넷째는 도쿄전력의 법적정리, 다섯째는 원자력 사업자간의 상호 지원 등이다. 첫째부터 셋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와 제51조에서 반

53) 한국에서의 부령과 유사한 것임.

54) 有林浩二、前掲、35頁参照。

영되었으며, 넷째 사항은 부칙 제3조의 2에서, 그리고 다섯째 논점에 대해서는 제58조 제4호에서 반영되었다.⁵⁵⁾

IV. 소 결

일본에서의 원자력 관련 법제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61년에는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다. 또한 1999년에 일어난 도카이무라 JOC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원자력재해에 대하여 총리가 신속하게 대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이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예상치 못한 사태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할 때 당해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로의 운전 등에 관한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이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⁵⁶⁾

이러한 예외규정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늦은 대응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5) 有林浩二、同上、37頁参照。

56) 「福島原発、政府賠償一兆円超も 例外規定を初適用へ」 Japan Press Network: <http://www.47news.jp/CN/201103/2011032001000542.html> (검색일: 2012. 6. 17.)

<표11> 일본 원자력 관련 법률

법령명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법(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平成23年8月10日 法律 第94号)
원자력발전에서의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原子力発電における使用済燃料の再処理等のための積立金の積立て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平成17年5月20日 法律 第48号)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原子力発電施設等立地地域の振興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12年12月8日 法律 第148号)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原子力災害対策特別措置法)(平成11年12月17日 法律 第156号)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る法律)(昭和36年6月17日 法律 第147号)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に関する法律)(昭和36年6月17日 法律 第148号)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昭和30年12月19日 法律 第186号)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原子力委員会及び原子力安全委員会設置法)(昭和30年12月19日 法律 第188号)
헤이세이 23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平成二十三年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平成23年8月5日 法律 第91号)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피난주민에 관한 사무처리의 특례 및 주소이전자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률(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る災害に対処するための避難住民に係る事務処理の特例及び住所移転者に係る措置に関する法律)(平成23年8月12日 法律 第98号)

법령명
<p>헤이세이 23년 3월 3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에 수반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平成二十三年三月十一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23年8月30日 法律 第110号)</p>
<p>도쿄전력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법(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法)(平成23年10月7日 法律 第112号)</p>
<p>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独立行政法人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法)(平成16年12月3日 法律 第155号)</p>
<p>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법(独立行政法人原子力安全基盤機構法)(平成14年12月18日 法律 第179号)</p>

제 4 장 한국의 법제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는 일본에서의 지진을 비롯한 재해대책 법제와 그리고 원자력관련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일본에서의 재해대책 법제와 원자력 법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해대책 법제와 원자력 법제를 각각 비교하면서 한국의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 재해관련법제 비교

먼저 일본 「재해대책기본법」과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는 자연재해와 인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법체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통합적인 법체계가 구축되었다.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0442호)」은 10개의 장과 82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된다. 자세히 보면, 제1장이 ‘총칙’(제1-8조), 제2장이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9-21조), 제3장이 ‘안전관리계획’(제22-25조), 제4장이 ‘예방 및 대비’(제25조의2-제34조의 3), 제5장이 ‘응급대책’(제35-48조), 제6장이 ‘긴급구조’(제49-58조), 제7장이 ‘재난의 복구’(제59-61조), 제8장이 ‘재정 및 보상 등’(제62-67조), 제9장이 ‘부칙’(제69-78조의 2), 제10장이 ‘벌칙’(제79-82조), 그리고 부칙(제1-3조)으로 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첫째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동항 가), 둘째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동항 나), 셋째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동항 다)를 들 수 있다. 즉,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널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에서는 ‘해외재난’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다른 한편,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재해의 정의를 “폭풍, 호우(豪雨), 호설(豪雪), 홍수, 고조(高潮), 지진, 해일, 분화(噴火) 기타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의 화재 혹은 폭발 기타 그것이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정령으로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57) 李永子 「災害・危機管理組織の編成をめぐって ―日・韓比較による考察―」, 人間文化研究科年報、第21号(2006.3.)226-228頁参照。

피해”라고 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만 포함된다.⁵⁸⁾

<표12>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규정대상⁵⁹⁾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제3조 제1호 가)	폭풍, 호우, 호설, 홍수, 고조, 지진, 해일, 분화 등(제2조 제1호)
사 고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동호 나)	해당사항 없음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동호 다)	해당사항 없음

II. 지진관련법제 비교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지진관련 법제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지진재해대책법」과 일본의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원래 지진에 관한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있었으나 2008년 3월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진에 관한 규정이 「지진재해대책법」으로 이행되었다. 이 법률은 지진 및 지진에 의한 해일의 관측·예방 및 대비, 내진대책, 지진에 대한 대응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⁰⁾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제1조에서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

58) 李永子、同上、228頁.

59) 李永子、同上、226頁参照.

60) 이종영, 백옥선, 「방재법규론」, 서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09, 24면.

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8개의 장과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이 ‘총칙’(제1-4조), 제2장이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제5-9조), 제3장이 ‘예방과 대비’(제10-11조), 제4장이 ‘내진대책’(제12-17조), 제5장이 ‘대응’(제18-21조), 제6장이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제22-23조), 제7장이 ‘보칙’(제24-27조), 제8장이 ‘벌칙’(제28-29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된다.

이 법률은 ‘지진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키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또한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내진대책’, ‘지진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동조 제2항).

「지진재해대책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진재해의 복구 등 「지진재해대책법」에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⁶¹⁾

61) 이종영, 백옥선, 위의 책, 같은 면.

한국에서는 그 동안 대규모 지진이 그 동안 일어난 적이 없으므로 「지진재해대책법」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검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진재해대책법」의 구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 있어서도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이나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등 지진 관련 법제가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며 지진과 관련된 법제의 체계가 복잡하다. 예를 들면 일본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에서는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 지정, 지진관측체제 정비 기타 지진방재체제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지진방재 응급대책 기타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제1조). 한편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에서는 “지진방재 대책 실시에 관한 목표 설정과 지진방재 긴급사업 5개년계획 작성 및 이에 의거한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대하여 정하면서 지진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 등이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제1조), 이름이나 내용도 비슷한 법률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에서는 문부과학성 하에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라는 기관을 두면서(제7조 제1항), 문부과학대신이 본부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한편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경계선언을 발표하여 내각부 밑에 ‘지진재해 경계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내각총리대신이 경계본부장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제11조). 따라서 ‘지진재해 경계본부’의 장은 총리가 담당하지만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장은 문부과학대신이 담당하는 등, 책임자가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활한 대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에 관한 규정이 통일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오히려 일본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역시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상청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대해서 수립한다고 정해져 있으며(제5조 제1항), 책임자의 소재가 복잡하게 정해져 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자는 당해 시설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계측 자료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따라서 여러 처장 또는 장관에게 관할이 나누어져 있으며 과연 긴급적인 사태에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에서는 지진발생 빈도가 낮다고 하기는 하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는 각각 처장 또는 장관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할 것이다.

<표13> 한국과 일본의 지진재해 관련 법률

한국 「지진재해 대책법」	일본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1 조의2 지진방재대책 실시에 관한 목표 설정
제 3 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 2 조 지진방재 긴급사업 5개년계획의 작성 등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3 조 지진방재 긴급사업 5개년계획의 내용
제 5 조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 등	제 4 조 지진방재 긴급사업에 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의 특례 등
제 6 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 5 조 지방채에 대한 배려
제 7 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제 6 조 재정상의 배려 등
제 8 조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제 6 조의2 공립초등학교 등에 대한 내진진단의 실시 등
제 9 조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협의회의 구성 등	제 6 조의3 사립 초등학교 등에 대한 배려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이용 등	
제11조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한국 「지진재해 대책법」	일본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제13조 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 계획 수립 등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제18조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22조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손실보상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 7 조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설치 및 소관사무 제 8 조 본부의 조직 제 9 조 정책위원회 제10조 지진조사위원회 제11조 지역에 관한 지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제12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력 제13조 조사연구의 추진 등 제14조 상정되는 지진재해 등의 주지

Ⅲ. 원자력 손해배상관련법제 비교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관련 법제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주요한 원자력관련 법률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10912호, 2011.7.25. 타법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0910호, 2011.7.25. 일부개정)」, 「원자력 안전법(법률 제10911호, 2011.7.25. 제정)」 등이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구 원자력법으로부터 분리된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책정하는 것, 원자력안전의 전문기관을 두게 하는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정 전반을 통괄하는 것 등이 규정된다.⁶²⁾

「원자력안전법」은 2011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동년 10월에 시행되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이나 ‘핵물질’, ‘핵연료물질’,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정련’,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처리’, ‘핵연료주기사업’, ‘방사선관리구역’, ‘국제규제물자’, ‘방사성폐기물’, ‘피폭방사선량’,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원자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각각 정의를 정하고 있다(제2조).

「원자력손해배상법」은 1969년 1월에 제정·시행되었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62) 藤原夏人 「【韓国】原子力安全委員会の独立」 外国の立法(2011.8) 20頁。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은 2003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2004년 2월에 시행되었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한편, 일본에서는 원자력 전반에 대해서는 「원자력 기본법」이 있으나 원자력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⁶³⁾ 원자력의 안전면에 관해서는 「원자력 기본법」 제2장의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만 규정이 보인다. 그리고 사전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한국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일본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면 조문 구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벌칙에 대해서이다. 일본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중략)를 강구하지 않으면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480만 원(2012년 6월17일 현재))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8조), 일본보다도 징역형은 길지만 벌금형은 훨씬 낮다.

63)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안전 확보나 평화이용을 위한 규제는 「원자로등 규제법」과 「방사선장애통제법」의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a_menu/anzenkakuho/anzenkakuho/1260977.htm (검색일: 2012. 6. 15.)) 이 글에서는 주로 원자력 손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는 소멸시효에 대해서이다. 한국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제 13조의 2에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의 2 제1항), 그리고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체상해, 질병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동항 후단). 한편 일본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일본 민법 제724조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불법행위 시부터 20년이 경과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에 차이가 있다.

셋째는 무과실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원자력 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한국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일본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만 예외로 규정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당해 지진재해가 ‘과도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하여 예외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보상대상으로 피난 주민 약 22만 명 이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긴 기업 그리고 풍문 피해를 받은 농가가 포함된다고 한다.⁶⁴⁾

<표14>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손해배상 관련 법률

한국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본 「원자력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2 조 정의
제 2 조의2 적용범위	제 3 ~ 4 조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중 등
제 3 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제 5 조 구상권
제 3 조의2 배상책임한도	제 6 조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
제 4 조 구상권	제 7 조~제 7 조의2 손해배상조치의 내용
제 5 조 손해배상조치의무	제 8 ~ 9 조 원자력손해배상보험계약
제 6 조 배상조치액	제 10~11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제 7 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제 12조 공탁
제 8 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제 13조 공탁물의 환부
제 9 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제 14조 공탁물의 반환
제 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제 15조 문부과학성·법무성령으로 위임
제 11조 공탁	제 16 ~ 17조 국가의 조치
제 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제 18조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
제 13조 공탁의 반환	제 19조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의견서 제출
제 13조의2 소멸시효	제 20조 제 10조 제 1항 및 제 16조 제 1항 규정의 적용
제 14조 정부의 조치	제 21조 보고 징수 및 출입검사
제 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 22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국토교통대신과의 협의
제 16조 보고 및 검사	제 23조 국가에 대한 적용 제외
제 17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제 24 ~ 26조 벌칙
제 18조 적용의 배제	
제 19조 벌칙	
제 20조 과태료	
제 21조 양벌규정	
제 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64) 「福島原発、政府賠償一兆円超も 例外規定を初適用へ」 Japan Press Network: <http://www.47news.jp/CN/201103/2011032001000542.html> (검색일: 2012. 6. 17.)

IV. 소 결

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재해대책법제, 지진대책법제 그리고 원자력 손해배상 법제에 대해서 각각 비교하였다. 재해대책법제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도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종합적 및 망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진 대책 법제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과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2원적이고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 손해배상 법제를 비교하면 한국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책임의 예외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일본만큼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난 일본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참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는 일본의 재해관련법제와 원자력관련법제 그리고 한국의 재해관련법제와 원자력관련법제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보다도 많은 재해를 당한 일본에서는 다양한 법제가 이루어졌으나 ‘특별조치법’ 등 그 때 그 때 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해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가 완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에도 많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가 미비하여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신속한 대응이 늦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가장 큰 요인은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부족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학적으로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국가긴급권이란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개념에 저촉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메이지헌법 제31조에서는 ‘비상대권’이 인정되어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군부의 폭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일본헌법에서는 국가긴급권이나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일본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비상사태’나 ‘유사’ 그리고 ‘국가긴급권’ 등에 대한 법정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저촉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논의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자세는 오히려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므로 ‘본말전도’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앞으로 일본에서는 4년 이내에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사후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제

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를 미리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법제보다도 오히려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결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가긴급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태에 대한 법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헌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절차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재해 관련 법제는 1990년대까지는 ‘재난’과 ‘재해’가 2원화된 상태였으나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1원적인 법제도로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법제도 정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법제를 사전에 구축하는 방법으로 방재를 예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한국 문헌

단행본

이종영, 백옥선, 「방재법규론」, 서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09.

논문

김두진, “지진·지진해일 관측·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고려법학」 제60호, 2011.

김치환, “일본에서의 지진과 해일대응법체계”, 「고려법학」 제60호, 2011.

오선영, “초국가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고려법학」 제61호, 2011.

최병조, “지진과 법 -로마법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So, Byungchun and Salatiello, Christopher., “The Principle of Emergency Notificatio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1.

외국 문헌

단행본

伊藤滋編 『東日本大震災復興への提言—持続可能な経済社会の構築』(東京大学出版会・2011)

참고 문헌

- 伊藤滋・尾島俊雄 『東日本大震災からの日本再生』(中央公論新社・2011)
- 岩淵美智子 『政治は動いていないのか—東日本大震災と政治』(パブラボ・2011)
- 小倉秀夫 『震災の法律相談』(学陽書房・2011)
- 東京弁護士会法友会東日本大震災復興支援特別委員会編 『「3・11」震災法務Q&A』(三和書籍・2011)
- 畑村洋太郎 『未曾有と想定外—東日本大震災に学ぶ』(講談社・2011)
- 水島朝穂 『東日本大震災と憲法』(早稲田大学出版部・2012)

논문

- 愛敬浩二 「原子力行政の課題 — 「フクシマ」の経験を踏まえて」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 阿部泰隆 「災害被災者の生活再建支援法案(上)」 ジュリスト、通巻第1119号(1997年9月)。
- 阿部泰隆 「災害被災者の生活再建支援法案(下)」 ジュリスト、通巻第1121号(1997年10月)。
- 阿部泰隆 「大震災・原発危機：緊急提案」 法律時報、第83巻第5号(通巻第1034号)、(2011年5月)。
- 荒木修 「震災と廃棄物—災害廃棄物行政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蟻川恒正 「原子力発電所」としての日本社会」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 有林浩二 「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法の制定と概要」 ジュリスト、通巻第1433号(2011年11月)。

- 李永子 「災害・危機管理組織の編成をめぐって―日・韓比較による考察―」 人間文化研究科年報、第21号(2006年3月)。
- 飯島淳子 「国と自治体の役割分担―「連携」の可能性」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飯島淳子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 生田長人 「今回の震災の特徴と災害法制のあり方」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池村正道 「原子力法制とその整理」 法律のひろば、2011年9月。
- 石川健治 「法律学にできること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緊急事態」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 石川健治 「危機の政府／政府の危機」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 伊藤秀夫 「かつての被災地から支援に向かう ―10.23から3.11へ」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 稲葉馨 「東日本大震災と政府対応」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猪股正 「県外避難者支援と専門家・市民・行政の連携」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 今井照 「原発災害事務処理特例法の制定について」 自治総研、通巻第395号(2011年)。
- 岩間昭道 「日本国憲法と非常事態・環境保全」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植木俊哉 「東日本大震災と福島原発事故をめぐる国際法上の問題点」 ジュリスト、通巻1427号(2011年8月)。

참고 문헌

- 氏本厚司「東日本大震災と裁判所」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大塚直「法律学にできること—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原発の損害賠償」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 大塚直「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る損害賠償」法律時報、第83巻第11号(通巻第1039号)、(2011年10月)。
- 大塚直「福島第一原発事故による損害賠償と賠償支援機構法—不法行為法学の観点から」ジュリスト、通巻第1433号(2011年 11月)。
- 大橋洋一「法律学にできること—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集団移転」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 大屋雄裕「文脈と意味：情報の二つの側面」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 大脇成昭「法律学にできること—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自治体の連携」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 岡本正「東日本大震災相談分析結果の報告 1万8000件超のデータベースが示す被災者の「真のニーズ」と被災地域ごとの復興支援のかたち」法律のひろば、2011年9月。
- 小口幸人「司法科措置で被災者として、法律家として」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 戒能一成「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の検証すべき問題点」法律時報、第83巻第8号(通巻第1037号)、(2011年7月)。
- 戒能通厚「東日本大震災と学術に求められる課題—日本学術会議の法学系の活動を中心に」法律時報、第83巻第5号(通巻第 1034号)、(2011年5月)。
- 川合敏樹「東日本大震災にみる原子力発電所の耐震安全性の確保の在り方について」法律時報、第83巻第5号(通巻第1034号)、(2011年5月)。

河上正二 「法律学にできること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行方不明者(死亡・結婚・財産)」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片桐直人 「財政再建下の復興財源」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北原啓司 「法制度と向き合う真の復興まちづくりとは」 ジュリスト、通巻1427号(2011年8月)。

北村喜宣 「仮設住宅の供与と運用」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小島延夫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る被害とその法律問題」 法律時報、第83巻第9・10号(通巻第1038号)、(2011年8・9月)。

小西康之 「法律学にできること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東日本大震災に関する雇用 政策と今後の課題」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小林寛 「放射性物質の漏出による海洋汚染に対する法的対応」 法律時報、第83巻第7号(通巻第1036号)、(2011年6月)。

駒村圭吾 「“震源地” としての原発、“生命線” としての情報」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駒村圭吾、中島徹 「3.11大震災と憲法の役割」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小山剛 「震災と財産権」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小山剛 「法律学にできること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震災と基本権保護義務」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下山憲治 「原子力事故とリスク・危機管理」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참고 문헌

酒井桃子 「県外避難した子どもたちに対する学習支援活動」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阪口正二郎 「ACのCMと、「自粛」、作られる「安心」」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白井京 「韓国における原子力安全規制法制」 外国の立法、通巻第244号(2010年6月)。

鈴木秀美 「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課題 —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政府対応を中心に」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曾我部真裕 「風評被害」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高木光 「裁判所は原子炉の安全性をどのように取り扱ってきたか」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高村ゆかり 「法律学にできること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国際環境」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只野靖 「原発に関する安全規制の誤り」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津久井進 「震災と法律家の動きの全体像 —相談活動から見える全体像の分析」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津久井進 「被災者に希望を与える立法提言活動」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土田和博 「大震災と電気事業法制のあり方」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中里実 「震災復興と財政」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中島厚夫 「東日本大震災に関する特別立法について」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中島徹 「国家がなすべきこと、民間がなすべきこと」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3号(2011年12月)。
- 中谷聡 「仙台弁護士の震災復興支援活動について」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仁科秀隆、山田和彦 「震災への企業法務の対応」 法律のひろば、2011年9月。
- 西脇由弘 「法律学にできること—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シビアクシデント」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 日本農林法学会 「東日本大震災と農林水産行政」 法律時報、第83巻第9・10号(通巻第1038号)、(2011年8・9月)。
- 野澤正充 「法律学にできること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約款・消費者問題」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 野村武司 「震災からの自治体の機能回復と住民情報・個人情報」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 野村豊弘 「原子力事故による損害賠償の仕組みと福島第一原発事故」 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 墓田桂 「「国内強制移動に関する指導原則」の意義と東日本大震災への適用可能性」 法律時報、第83巻第7号(通巻第1036号)、(2011年6月)。
- 墓田桂、エリザベス・フェリス 「災害を超えて —国際災害対応法(IDRL)の現状と日本に期待される役割」 法律時報、第83巻第8号(通巻第1037号)、(2011年7月)。
- 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本部事務局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の解説」 法律のひろば、2011年9月。

참고 문헌

樋口陽一 「<3.11> 後に考える「国家」と「近代」 — 「耐えられぬほどの軽さ」で扱ってよいか」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人見剛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の損害賠償」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平田健治 「法律学のできること —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事務管理・無償契約(ボランティア)」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藤岡毅 「「災害弱者」としての障害者支援」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0号(2011年8・9月)。

藤原夏人 「【韓国】原子力安全委員会の独立」 外国の立法、通巻第248号(2011年8月)。

藤原夏人 「韓国の災害法制」 外国の立法、通巻第251号(2012年3月)。

本庄淳志 「法律学のできること —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個別的労働関係法上の諸問題」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本田正樹 「法律学のできること — 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履行不能と金融機能の確保」 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松嶋隆弘 「被災地の法律相談の現状と課題 大学で実施した法律相談の結果を振り返って」 法律のひろば、2011年9月。

松平徳仁 「緊急事態における避難」 法学セミナー、通巻第682号(2011年11月)。

水島朝穂 「東日本大震災と憲法 — 被災地で考えたこと」 法律時報、第83巻第8号(通巻第1037号)、(2011年7月)。

皆川宏之、原昌登「雇用契約と大規模災害」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宮谷隆「法律学にできること 一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大震災後の株主総会の準備事務と議事運営」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三好規正「法律学にできること 一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環境保全と国土防備」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民主主義科学者協会法律部会理事会「東日本大震災・大津波と原発事故のもたらしている危機と困難を乗り越えるために」法律時報、第83巻第5号(通巻第1034号)、(2011年5月)。

森田章「政府の援助の義務と電力会社のガバナンス」ジュリスト、通巻第1433号(2011年11月)。

森田修「法律学にできること一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履行不能と事情変更」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山岡義典「救援期から生活再建期に向けての民間支援の課題」ジュリスト、通巻1427号(2011年8月)。

山崎栄一「東日本大震災を踏まえた被災者救済の課題」法律時報、第83巻第12号(通巻第1041号)、(2011年12月)。

山野目章夫「法律学にできること一東日本大震災を契機に考える 物権」法学教室、通巻第372号(2011年9月)。

山本哲生「大規模災害と保険」ジュリスト、通巻第1427号(2011年8月)。

山本庸幸「東日本大震災の救援、復興等に関する法令について」法律時報、第83巻第8号(通巻第1037号)、(2011年7月)。

참 고 문 헌

尹龍澤 「韓国における災害管理法制の現状と行方についての一考察」、
孝忠延夫・鈴木賢編 『東アジアにおける法治の現状と課題 鈴木
敬夫先生古稀記念』(成文堂・2008年)。

渡辺淑彦 「原発周辺地域の現状と法律家の役割」 法学セミナー、通巻
第680号(2011年8・9月)。

渡辺智之 「震災復興に関する税制の対応」 ジュリスト、通巻1431号(2011
年10月)。

신 문

産経新聞、2009年11月27日、5面。

인터넷

언 론

朝日新聞 : <http://www.asahi.com>

産経新聞 : <http://sankei.jp.msn.com>

時事通信社 : <http://www.jiji.com>

Japan Press Network : <http://www.47news.jp>

NHK : <http://www.nhk.or.jp>

정부기관

内閣府(防災担当) : <http://www.bousai.go.jp>

内閣府原子力委員会 : <http://www.aec.go.jp>

經濟産業省 : <http://www.meti.go.jp>

国土交通省 : <http://www.mlit.go.jp>

文部科学省 : <http://www.mext.go.jp>

復興庁 : <http://www.reconstruction.go.jp>

原子力損害賠償支援機構 : <http://www.ndf.go.jp>